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
일부개정법률안  
(정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32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7. 29.

발 의 자 : 정준호 · 이학영 · 임호선  
김현정 · 임미애 · 윤후덕  
진성준 · 민병덕 · 양부남  
차지호 · 이춘석 의원  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하는 제품 중 일부가 중금속에 오염되거나 국내 허용 범위를 넘는 전자파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신체에 위해한 경우가 보고되고 있으나,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고지나 안내가 없어 구매자 개인이 제품의 안전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.

또한 한편으로 물품의 판매를 의뢰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경우에도 그 사업이 영세하여 판매하려는 물품과 관련된 인증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됨.

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제품 등이 국내에서 제조·판매·수입 시 필요한 인증 등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, 소비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유해한 물품이 판매

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소비자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제고하려는 것  
임(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).

##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재화등이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,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「전파법」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·등록 등을 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제20조의2제2항 본문 중 “제20조제2항”을 “제20조제2항 및 제3항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인증 등 확인에 관한 적용례)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청약을 접수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0조(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) ①·② (생략)  <u>&lt;신 설&gt;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em;">③ (생략)</p> <p>제20조의2(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) ① (생략)            ②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</p>	<p>제20조(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 <u>③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재화등이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,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「전파법」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·등록 등을 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</p> <p>제20조의2(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)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② -----제20조제2항 및 제3항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</p>

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. 다만,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·④ (생략)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